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6가단511444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변론 종결 2018. 9. 4.

판결 선고 2018. 10. 1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061,090원과 그 중 151,060,866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E와 피고 B 사이에 2015. 12.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나. 피고 F와 피고 B 사이에 2016. 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3.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E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2015. 12. 31. 접수 제755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F는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2016. 1. 4. 접수 제1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E 사이 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3항과 같은 판결

2.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5. 10. 29.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66,63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66,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2015. 5. 20.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는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5. 20. 접수 제280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E과 피고 B 사이에 2015. 9. 23.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E은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9. 24. 접수 제55365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 B이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151,060,866원, 확정손해금 224원의 합계151,061,090원과 그 중 대위변제액 151,060,86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4. 8.부터 원고가 구하는 위 피고들에 대한 최후 소장송달일인 2016. 6. 27.까지는 약정한 지연손해금 비율 연 1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E,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5. 12. 29. 전후에 걸쳐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C, D, E, F와 매매계약, 매매예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피고들에게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 B이 그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이고,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거나 그 기초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사전구상권 및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상 이와 같은 사전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C, D, E, F를 상대로 피고 B과 체결한 각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66,630,000원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계약의 일부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고, 나머지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를 청구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처분행위로 채무초과의 상태가 초래되어야 한다.

피고 B이 2015. 5. 20. 그가 소유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15. 5. 20. 접수 제2807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9. 23. 피고 E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15. 9. 24. 접수제55365호로 각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5. 10. 29. 피고 C과 자신이 소유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15. 10. 30. 접수 제10409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12. 30. 피고 E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15. 12. 31. 접수 제75585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6. 1. 4. 피고 F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16. 1. 4. 접수 제17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전제로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들과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의 가액이 2,742,458,900원이고, 피고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5. 5. 20.경의 채무액은 2,746,472,000원, 피고 E과 매매예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5. 9. 23.경 및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5. 10. 29.경의 채무액은 2,900,529,000원, 피고 E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5. 12. 30.경의 채무액은 2,890,529,000원, 피고 F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6. 1. 4.경의채무액은 2,891,898,863원이었다고 주장한다.1)

2)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무액에는 피고 B의 G에 대한 채무액 5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2) G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피고 A이 2015. 11. 9. G에게서 500,000,000원을 차용할 때 피고 B이 연대보증을 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전에는 피고 B이 5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초로 하더라도 2015. 11. 9. 전에는 피고 B이 부담하던 채무액은 위 주장의

금액에서 500,000,000원을 뺀 금액이 되므로, 피고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5. 5. 20.경의 채무액은 2,246,472,000원(=2,746,472,000원-500,000,000원), 피고 E과 매매예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5. 9. 23.경 및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5. 10. 29.경의 채무액은 2,400,529,000원(=2,900,529,000원-500,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적극재산에 미치지 못한다. 또 위각 일시경 피고 B과 피고 D, E, C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피고B에게 채무초과의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더라도 위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2015. 9. 23.자 매매예약 취소 및 그에 따른 각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 E, F는 피고 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피고 E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15. 12. 30.경 및 피고 F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6. 1. 4.경의 적극재산 가액이 2,741,858,750원이고, 2015. 12. 30.경의 채무액이 2,624,409,000원, 2016. 1. 4.경의 채무액이 2,635,778,863원에 달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3)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적극재산 가액에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237,250,000원(=72,500,000원+71,750,000원+9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4) 피고 B이 2015. 10.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0. 30.자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은 앞에서 보았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2015. 12. 30.경 및 2016. 1. 4.경의 피고 B의 적극재산 가액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주장을 기초로 하더라도 위 각 일시경 피고 B의 적극재산 가액은 2,504,608,750원(=2,741,858,750원-237,250,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위 피고들이 자인하는 피고 B의 당시 채무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위 피고들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 B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A은 2015. 12. 29. 타기관 연체사실이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A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 2015. 12. 29.경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갖게되었고, 이후 사후구상권까지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이 그 후인 2015. 12. 30. 피고 E과, 2016. 1. 4. 피고 F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구상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피고 B의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피고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406조제1항의 해석상 수익자인 피고 E, F 역시 이를 알았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E이 2015. 12. 30. 피고 B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F가 2016.1. 4. 피고 B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E, F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 B, F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2015. 12.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피고C,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

청 구 원 인

1. 신용보증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합니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B 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 회사가 소외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 이라고 합니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2013. 12. 20. 보증금액 금 165,6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19.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가, 최종 2016. 12. 16.로 보증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2. 주채무의 내용

소외 국민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12. 24.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여신개별거래약정에 따라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금 207,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4. 12. 19.로 각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대출하였습니다.

(이후 보증기한의 변경으로 변제기한이 2016. 12. 16.로 변경되었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대위변제금

피고 회사는 2015. 12. 29. 타기관 연체사실이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됨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6. 1. 12.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한 대출금의 이자연체 이후 2016. 1. 20. 원금연체로 최종 부실처리 되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2016. 4. 8.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151,091,210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나. 대위변제금의 일부회수

원고는 2016. 4. 8. 위와 같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 중 피고 회사로부터 2016. 5. 4. 금 30,344원을 회수하여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잔액은 금 151,060,866원(151,091,210원 - 30,344원)입니다.

다. 지연손해금

(1)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율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 원고가 정한 비율은 이행일인 2016. 4. 8.부터 연 10%입니다.

(2) 확정손해금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보증과 관련하여 2016. 5. 4. 금 30,344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회수금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6. 4. 8.부터 회수일인 2016. 5. 4.까지 27일간의 확정손해금을 위 (1)항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금 224원($30,344 \times 10/100 \times 27/365$, 원미단은 버림)입니다.

별지 1 목록

부동산의 표시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7층 제701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0.42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 1058.9㎡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 100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2065.9분의 8.788

나. 1동의 건물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7층 제725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29.2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 1058.9㎡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 100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2065.9분의 8.45

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유부분의 권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7층 제73호

구 조 : 월근콘크리트조

면 적 : 37.4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 1058.9㎡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 100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2065.9분의 10.816

(이상 현 소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별지 2 목록

부동산의 표시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야 5157㎡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 99㎡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야 496㎡
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야 5276㎡
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 1144㎡
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야 162㎡

(이상 지분 5분의 1 공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 1) 2018.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2) 2018.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3) 2018. 5. 1.자 준비서면

4) 2018. 5. 1.자 준비서면